

강선희(법보행) 포교사님께

삼보에 귀의합니다.

불타의 교법을 흥포하며 수행정진 하시는 포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시길 발원합니다.

다름 아니옵고, 포교사님의 단비가 미납되어 연락드립니다.

관련조문 - 포교사단 규정 제5조(단원의 의무) 6항, 7항

제5조(단원의 의무)

⑥ 단원이 1년 이상 단비를 미납할 시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단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이때로부터 1년 이내에 미납 단비를 완납하면 일시 정지되었던 단원의 자격은 회복된다. 단, 미납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격 정지된다.

⑦ 지역단장은 단원이 6개월 이상 단비를 미납시 안내통지문을 보내야 한다.

※ 즉, 24개월 이상 미납 시 자동으로 자격정지 처리됨.

이미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포교사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월 15,000원의 단비 납부입니다.

포교사님의 경우 2022년 02월 28일 기준 **총 14개월**

(2020년 9,10,12월/ 2021년 1,2,4,5,6,8,10,11,12월/ 2022년1월,2월)의 단비가 미납된 것으로 확인되오니 납부하시어 포교사의 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입금계좌 : 농협 301-0071-9813-11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2. 문 의 처 : 032-435-1080 인천경기지역단 사무국

불기2566(2022)년 03월 08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장 원경**



김금옥(보덕화) 포교사님께

삼보에 귀의합니다.

불타의 교법을 흥포하며 수행정진 하시는 포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시길 발원합니다.

다름 아니옵고, 포교사님의 단비가 미납되어 연락드립니다.

관련조문 - 포교사단 규정 제5조(단원의 의무) 6항, 7항

제5조(단원의 의무)

- ⑥ 단원이 1년 이상 단비를 미납할 시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단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이때로부터 1년 이내에 미납 단비를 완납하면 일시 정지되었던 단원의 자격은 회복된다. 단, 미납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격 정지된다.
- ⑦ 지역단장은 단원이 6개월 이상 단비를 미납시 안내통지문을 보내야 한다.

※ 즉, 24개월 이상 미납 시 자동으로 자격정지 처리됨.

이미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포교사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월 15,000원의 단비 납부입니다.

포교사님의 경우 2022년 2월 28일 기준 **총 12개월**

(2020년 7,9,10월/ 2021년 2,4,6,7,8,10,11/ 2022년 1월,2월)의 단비가 미납된 것으로 확인되오니 납부하시어 포교사의 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입금계좌 : 농협 301-0071-9813-11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2. 문 의 처 : 032-435-1080 인천경기지역단 사무국

불기2566(2022)년 03월 08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장 원경**



김정선(금강심) 포교사님께

삼보에 귀의합니다.

불타의 교법을 흥포하며 수행정진 하시는 포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시길 발원합니다.

다름 아니옵고, 포교사님의 단비가 미납되어 연락드립니다.

관련조문 - 포교사단 규정 제5조(단원의 의무) 6항, 7항

제5조(단원의 의무)

⑥ 단원이 1년 이상 단비를 미납할 시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단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이때로부터 1년 이내에 미납 단비를 완납하면 일시 정지되어진 단원의 자격은 회복된다. 단, 미납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격 정지된다.

⑦ 지역단장은 단원이 6개월 이상 단비를 미납시 안내통지문을 보내야 한다.

※ 즉, 24개월 이상 미납 시 자동으로 자격정지 처리됨.

이미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포교사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월 15,000원의 단비 납부입니다.

포교사님의 경우 2022년 02월 28일 기준 **총 15개월**

(2020년 12월~2022년 2월까지)의 단비가 미납된 것으로 확인되오니 납부하시어 포교사의 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입금계좌 : 농협 301-0071-9813-11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2. 문 의 처 : 032-435-1080 인천경기지역단 사무국

불기2566(2022)년 03월 08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장 원경 권태근



김진호(법광) 포교사님께

삼보에 귀의합니다.

불타의 교법을 흥포하며 수행정진 하시는 포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시길 발원합니다.

다름 아니옵고, 포교사님의 단비가 미납되어 연락드립니다.

관련조문 - 포교사단 규정 제5조(단원의 의무) 6항, 7항

제5조(단원의 의무)

⑥ 단원이 1년 이상 단비를 미납할 시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단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이때로부터 1년 이내에 미납 단비를 완납하면 일시 정지되었던 단원의 자격은 회복된다. 단, 미납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격 정지된다.

⑦ 지역단장은 단원이 6개월 이상 단비를 미납시 안내통지문을 보내야 한다.

※ 즉, 24개월 이상 미납 시 자동으로 자격정지 처리됨.

이미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포교사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월 15,000원의 단비 납부입니다.

포교사님의 경우 2022년 02월 28일 기준 **총 11개월**

(2021년 4월~2022년 2월까지)의 단비가 미납된 것으로 확인되오니 납부하시어 포교사의 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입금계좌 : 농협 301-0071-9813-11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2. 문 의 처 : 032-435-1080 인천경기지역단 사무국

불기2566(2022)년 03월 08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장 원경**



유병윤(보운) 포교사님께

삼보에 귀의합니다.

불타의 교법을 흥포하며 수행정진 하시는 포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시길 발원합니다.

다름 아니옵고, 포교사님의 단비가 미납되어 연락드립니다.

관련조문 - 포교사단 규정 제5조(단원의 의무) 6항, 7항

제5조(단원의 의무)

⑥ 단원이 1년 이상 단비를 미납할 시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단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이때로부터 1년 이내에 미납 단비를 완납하면 일시 정지되었던 단원의 자격은 회복된다. 단, 미납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격 정지된다.

⑦ 지역단장은 단원이 6개월 이상 단비를 미납시 안내통지문을 보내야 한다.

※ 즉, 24개월 이상 미납 시 자동으로 자격정지 처리됨.

이미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포교사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월 15,000원의 단비 납부입니다.

포교사님의 경우 2022년 02월 28일 기준 **총 15개월** (2020년 12월~2022년 2월까지)의 단비가 미납된 것으로 확인되오니 납부하시어 포교사의 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입금계좌 : 농협 301-0071-9813-11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2. 문의처 : 032-435-1080 인천경기지역단 사무국

불기2566(2022)년 03월 08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장 원경



이선주(선혜) 포교사님께

삼보에 귀의합니다.

불타의 교법을 흥포하며 수행정진 하시는 포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시길 발원합니다.

다름 아니옵고, 포교사님의 단비가 미납되어 연락드립니다.

관련조문 - 포교사단 규정 제5조(단원의 의무) 6항, 7항

제5조(단원의 의무)

⑥ 단원이 1년 이상 단비를 미납할 시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단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이때로부터 1년 이내에 미납 단비를 완납하면 일시 정지되어진 단원의 자격은 회복된다. 단, 미납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격 정지된다.

⑦ 지역단장은 단원이 6개월 이상 단비를 미납시 안내통지문을 보내야 한다.

※ 즉, 24개월 이상 미납 시 자동으로 자격정지 처리됨.

이미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포교사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월 15,000원의 단비 납부입니다.

포교사님의 경우 2022년 02월 28일 기준 **총 14개월**

(2021년 1월~2022년 2월까지)의 단비가 미납된 것으로 확인되오니 납부하시어 포교사의 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입금계좌 : 농협 301-0071-9813-11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2. 문 의 처 : 032-435-1080 인천경기지역단 사무국

불기2566(2022)년 03월 08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장 원경



권태근

최규복(정광) 포교사님께

삼보에 귀의합니다.

불타의 교법을 흥포하며 수행정진 하시는 포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시길 발원합니다.

다름 아니옵고, 포교사님의 단비가 미납되어 연락드립니다.

관련조문 - 포교사단 규정 제5조(단원의 의무) 6항, 7항

제5조(단원의 의무)

⑥ 단원이 1년 이상 단비를 미납할 시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단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이때로부터 1년 이내에 미납 단비를 완납하면 일시 정지되었던 단원의 자격은 회복된다. 단, 미납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격 정지된다.

⑦ 지역단장은 단원이 6개월 이상 단비를 미납시 안내통지문을 보내야 한다.

※ 즉, 24개월 이상 미납 시 자동으로 자격정지 처리됨.

이미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포교사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월 15,000원의 단비 납부입니다.

포교사님의 경우 2022년 02월 28일 기준 **총 13개월**

(2021년 2월~2022년 2월까지)의 단비가 미납된 것으로 확인되오니 납부하시어 포교사의 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입금계좌 : 농협 301-0071-9813-11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2. 문 의 처 : 032-435-1080 인천경기지역단 사무국

불기2566(2022)년 03월 08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장 원경 권태근**

